



## EC 공동체 상품 인증 세부 기술 규정안내 (4)

### TECHNICAL FILE

#### 1. 도 입

대부분의 신접근 지침서들은 제조업자들에게 의무를 가하여 기술파일을 만들게 하는데 이는 제품의 지침서 요구사항에의 부합성을 입증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비록 각각의 지침서는 파일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만 제공되는 정보의 정도 내용 및 형태와 관련되는 보다 상세한 정보가 국가검사기관들에 의한 보다 나은 이용의 촉진을 보증하기 위하여 그리고 초안 단계에서 제조업자들의 업무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주어져야 한다.

#### 2. 기술파일의 목적

몇몇 지침서들에 있어서 기술파일은 회원국가들에 의한 시장감시의 틀 내에서 제품 부합성을 평가하는 주요 수단이다. 이러한 경우 부합성의 평가는 제3자기관 또는 인증기관의 관여없이 배타

적으로 제조업자의 부합성 선언에 의존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 제조업자에 의해 편집된 파일은 국가검사기관들에게 필수적인 것이다. 위원회(Commission)의 1983년 5월 7일의 결정은 제조업자의 부합성 선언과 관련하여 국가기관들은 그들이 제품이 모든 측면에서 요구하는 안전도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갖고 있을 때 안전성과 관련하여 수행된 시험에 관련되는 데이터를 전달하도록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들에게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이런 전달을 거절함은 부합성에의 가정을 의심케하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

므로 제품이 공동체 시장에 출하될 때 그들이 그렇게 요구한다면 이러한 기술파일은 능력있는 국가기관의 처분에 맡기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기타 지침서들에 있어서 자료제시 또는 기술파일은 제3자 기관의 개입을 통한 특정한 부합성

평가 절차를 완성시키는 수단들 중의 하나이다. 이는 단지 EC형식검증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이 인증은 기술파일에 포함된다. 이러한 경우에 기술파일은 주로 피통지 기관에 의한 부합성 평가를 의미하며 부합성인증에 고려되는 한 요소를 구성한다. 궁극적으로 피통지 기관은 파일을 평가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이런 경우에 있어 시장감시를 위해 기술파일을 요구할 수 있는 국가기관들은 우선 관련 피통지 기관들과 접촉해야 한다.

#### 3. 기술파일의 형식 및 내용

1990년 12월 13일의 90/683/EEC 결정에서 위원회(Council)는 다음을 확립했다.

즉 부합성평가 절차의 필수 목적은 시장출하된 제품이 지침서들의 규정에 표현된 것과 같은 요구사항들에 합치함을 보증할 수 있도록 위한 것이다.

(특히 사용자 및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하여)

위원회(Council)로 부터의 이 안내문은 그러므로 지침서들에 규정된 기술파일에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 할 때 고려되어야 하는 필수적 기준이다.

결과적으로 기술파일에 내포 된 상세한 내용은 언제나 제품의 본질 및 기술적 견지에서 볼 때 필요한 것에 의존하는데 이는 제품의 부합성 즉 제조자가 그것을 따랐을 경우 조화된 표준들에 또는 제조업자가 조화된 표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관련 지침서의 필수적 요구 사항에의 부합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case별로 제품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 시장 감시 목적을 위한 이 파일의 효과적 이용을 위해서는 지나친 서류작성(paper-make)은 회피되어야 한다.

이를 달성하고 제조업자의 업무를 용이하게 수행하게 하기 위해서는 검사기관들이 이 파일의 두 부분으로 분할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제안된다.

첫번째 부분(A)는 부합성평가 절차에 관련된 필수적 기술데이터의 요약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다음을 포함하고 있다.

- 제조업자의 이름 및 주소

그리고 제품의 식별

- 제조업자에 의해 준수되는 조화된 표준들의 목록 및 필수적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키기 위해 채택되는 해결책들

#### - 제품 기술

#### - 운영 요강

#### - 제품의 전반적 계획

두번째 부분은 전체 파일을 구성할 것인데 이는 모든 시험보고서, 품질매뉴얼과 관련한 정보, 계획들, 제품 및 과정의 기술, 관련된 표준들을 포함하고 있다. 만약 제조업자가 기술파일의 양분을 따르지 못하면 부합성 선언 또는 부합성 인증에 나타난 세부사항들이 사전 검사를 수행하는 목적으로 충분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 틀림없이 인증기관들은 전체 기술파일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 4. 기술파일의 유용성

기술파일은 검사 및 동체 목적을 위한 국가기관들의 처분에 맡겨져야 한다. 어떠한 예외가 있는데 최소한 하나의 기술파일을 공동체의 영역내에 보존토록 하는 이러한 의무사항은 제품의 정학적 기원이 무엇이든지간에 공동체 시장에의 제품출하의 시점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의무사

항은 공동체내에 확립된 제조업자 또는 그의 대표단에 대해 강제성을 띠고 있다.

공동체시장에의 제품 출하를 담당하나 기술파일을 소지하는 않는 사람은 다음사항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기술파일이 공동체의 내부에 위치된 곳에서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 국가기관들로부터의 요구에 대해 가능한한 기술파일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파일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는 제품 또는 포장에 특별히 언급될 필요는 없다.

파일은 체계적으로 요청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회원국들에 의한 시장감시를 위해 만들어진 정기기간중에만 요청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기술파일에 의 요청은 수행되는 검사의 요구사항에 비례하여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공동체 시장에의 시장 출하를 담당하는 제조업자 또는 개인은 검사기관들에게 필수 기술데이터의 요약본만을 제공한다.

두번째 부분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정한 포인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규정에 대한 제품부합성에 대하여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요청될 수 있다.

전체 기술파일은 필요한 경우에 합리적으로 요청될 수 있는데 이는 틀림없이 개별적 포인트가 체크되어야 하는 경우 뿐만이 아니며 그러한 경우에 있어 기술파일이 관련 부분이 요구되어야 한다.

만약 회원국내의 능력기관들이 기술파일을 요구하면 기술파일의 첫번째 부분은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송신을 위한 합리적 시간을 허용하고 있다.

그 부피 및 형태를 고려할 때 여분의 시간이 두번째 부분의 제출을 위해 인정되어야 한다.

시장검사절차의 범공동체차원의 조직 및 검사의 조정은 동일한 제조업자에 의한 상이한 검사 기관들에의 동일한 기술파일의 반복적 제출을 피해야 한다.

기술파일은 지침이 다른 기간에 관해 분명해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제품의 최종제조일로부터 최소 10년동안은 보존되어야 한다.

## 5. 기술파일의 언어

만약 공동체지침들이 어떠한 특정규정들을 파일의 언어와 관련하여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회원국들의 요구사항들은 사건별로 EEC조약의 Article30의 기반 위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이는 그들 요구들의 균형을 고려에 넣고 있는 것이다.)

회원국은 그 공식언어로 된 기술파일의 첫째부분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만약 국가 기관들이 기타 언어로 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번역이 요구되는 경우 파일을 소지하고 있는 개인은 검사기관들에의 파일의 첫째 부분의 제출을 위한 여분의 시간이 허용될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번역과 관련하여 어떠한 그 이상의 조건도 부가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인가된 번역자의 요구 등 .....

## 6. 법적 안정성

90/683/EEC 결정은 비밀정보의 법적 보호를 보증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회원국들이 엄격히 준수하여야 할 이러한 중요원리에는 어떠한 예외도 있을 수 없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회원국들은 평가, 검사, 감시에 관련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기술파일의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비밀을 엄수할 것을 보증하여야 한다. 정확한 규칙들은 이러한 신뢰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원국들에 의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신뢰성은 EN 45000시리즈에 또한 언급되는데 이는 회원국들에 의한 기관들의 통지에 관한 참조 표준들로서 기능한다.

## SAFEGUARD CLAUSE(보호조항)

### 1. 도 입

신 접근법 지침서는 시장 출하에 관한 일반조항 및 자유이동에 관한 조항의 참조자료를 포함한다. 첫번째는 그러한 지침서에 의해 커버되는 제품들은 그들이 사람, 짐승 또는 물건들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끼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시장출하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침서하에서는 안전한 제품들만이 시장 출하될 수 있다. 그에 대하여 자유이동 조항은 회원국들에게 의무를 가하여 관련 디렉티브들에 합치하는 제품들이 그들의 시장에 출하되어 자유로이 이동하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제품의 시장출하 및 자유이동은 회원국 가들에 의하여 취해지는 시장감시 수단들이 하나로써 제한되거나 금지될 수 있는데 그중 안전조항이 최종수단을 구성한다.

시장감시에 관한 장에서 위원회(Commission)는 회원국들이 시장출하된 제품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비적합성의 유형 및 상응하는 결과들의 유형분류를 제시한다.

(특히 범 공동체적 통보 절차에 관하여) 안전조항은 앞서 언급된 장에서 제시된 가장 중요한 경우들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모든 신접근 디렉티브에 포함된 이 조항은 CE마크를 부착하고 그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되는 제품이 인간, 동물 및 제품의 건강 및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음을 발견한 경우 그 제품의 시장 출하를 제한 또는 금지하던지 시장철시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보호조항은 공동체를 통한 시장감시를 확장하는 수단이다. 왜냐하면 그 효과는 제품이 공동체 차원에서 위협하다면 위원회(Commission)를 경유하여 기타 국가들을 경계 시킴으로써 그들이 그들의 영역에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회원국의 결정을 언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호조항은 공공기관들에 의한 관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말하자면 회원국들 및 위원회(Commission)에 의한 간여를 말하는데 그들은 그 사건을 다른 이해당사자들; 제조업자, 피통지 기관들, 시장감시책임기관들, 경제 주기 대표조직들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보호조항은 4개의 연속적인 단계들로 나누어질 수 있다.

- 1) 청 원
- 2) 수 행
- 3) 운 영
- 4) 결 과

## 2. 보호조항 작동(용) (invoking) 을 위한 조건들

보호조항 작동을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존재한다.

- 제품은 반드시 CE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이러한 협정들은 어떠한 지침서들에 의해 CE마크 부착에서 면제되는 제품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제품은 관련 지침서에 규정된 의도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이들 두 전제조건들은 보호조항이 어떠한 제품(CE마크 부착없이 규정 비부함으로 금지되는 제품 및 의도된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제품)에도 적용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들에 있어 회원국들은 만약 제품이 공공건강 및 안전에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가하는 경우 1988년 12월 21일의 위원회 Decisio 89/45/EEC에 규정된 것에 의해 보호조항없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데 위원회(Commission)뿐 아니라 기타 회원국들에도 동보 한다.

이 결정은 전문적 사용을 위해 특수하게 고안된 제품들 및 기타 공동체 입법에 의해 확립된 현존하는 동등한 통지 절차에 의해 커버되는 제품들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의 사용에서 비롯되는 위험들에 관한 신속한 정보의 교환을 위한 공동체 시스템을 확립한다. 예를들어 이러한 신속한 정보교환은 의료기기에 관련된 지침서의 필요부분을 형성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제품들은 CE마크를 부착하고 그들의 의도된 목적이 보호조항에 따를 수 있는지에 관해 아무 의심이 없을 때 자유이동이 허용된다. 마찬가지로 보호 조항은 제품들에도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신접근 지침서들 및 CE마크의 사용 및 부착에 관련한 제안에 규정된 규칙들은 회원국들로 하여금 CE마크의 부적절한 사용의 경우가 있을시마다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한다. 조치의 정도는 제품에 의해 야기된 위험 및 보호조항을 작동시키는 상황들에 의존 한다.

게다가 이 조항은 단지 엄격히 한정된 조건들 하에서만 작동될 수 있다.

첫째, 회원국들은 위반사항을 정해야 한다.

\* 이 발견은 사건의 상태를 기술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객관적이어야 하며 충분한 입증 수단을 구성하는 입증 가능한 증거들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 주로 이 발견은 단독

CASE가 아니라 그 이상의 반복된 실수들에 관련된다. 단독(고립된)적 CASE와 같은 단일사건 또는 제한된 수의 제품들을 뜻하는데 주로 보호조항 발동의 조건을 충족시키거나 발견의 한정된 결과에 비추어 조항을 작동하지 않기고 회원국이 결정한 경우이다.

\* 회원국은 회원국이 따르는 부합성평가 절차를 지적해야 한다. 그 발견에서 그것은 제품 사용자에 대한 비적합성의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

두번째로 제품은 인간, 동물 또는 제품들의 건강 및 안전 또는 관련 지침서에 내포된 기타 요구사항들을 위협해야 한다. 인간, 동물 또는 재화에 대한 이러한 위협의 평가는 회원국들에게 전반적인 책임을 남긴다. 그들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다소간의 예측 가능한 잠재적 위험이 있는지를 평가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보호조항 발동에 있어서 가장 섬세한 문제인데 이는 회원들이 두 가지 합정을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잉태도로서 어떠한 실제적 이유없이 그 밖의 곳으로부터 제조업자의 이익에 손상을 가함으로써 시장을 교란하는 경우, 한편으로는 보호조항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속한 통보절차의 보충적 성격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다. (CE마크를 부착한 제품이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가할 때) 이러한 규칙들이 일반적 상품안전성에 관한 지침서를 실행하기 위해 취해지는 수단들을 보충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3. 보호조항의 실행

제품의 적절한 사용에 관한 예측 가능한 조건들 하에 인간, 동물, 물건등의 건강 및 안전에의 위협이 확정되자마자 보호조항을 발동하는 회원국가는 제품의 마케팅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또는 시장에서 철수시키는 행정적 조치들을 취한다. 그들 자신의 권리로 회원국가는 제품을 시장에서 철수시키거나 시장출하를 제한 또는 금지시키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어떠한 상급 기관도 이 권리를 실행토록 요구되지 않는다. 이 조치들은 위에서 언급된 회원국가의 시장감시 기관에 의해 취해진다. 그들은 위험의 계속, 악화 또는 발생을 막을 목적으로 문제가 있을 사회원국의 영역내에서 즉각적인 행정적 보호의 형태를 취한다. 그러나 보호조항의 주요 목적은 그 영향이 전체 공동체에 확산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위원회(Commission) 그러한 국가적 수단들이 비적합

성을 종결하기 위한 일시적 경고조치어야 함을 느낀다. 보호조항의 목적은 다시한번 공동체 전역을 통한 자유이동을 위해 제품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다. 위험은 필수적인 비경제 요구사항들과 관련하여 결정되기 때문에(ex: 공공강, 안전, 인간과 동물의 생명의 보호, 식물의 보존) 보호의 수준은 전 공동체에 걸쳐 같아야 한다. 그로인해 보호조항을 발동한 회원국가는 위원회에 그가 취한 조치들을 통보해야 하는데 이는 그 결정의 이유 및 동기들을 지적하고 있다. 회원국이 보호조항 발동한 그 결정에 관해 정확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위원회(Commission)에 보내진 정보는 엄격하게 논의된 서류에 포함되어 위원회에 의한 파일처리에 드는 시간을 절약해야 한다. 이 정보는 가능한한 빨리 위원회에 보내져야 하는데 이는 다시 말하면 회원국이 위험을 인수하고 평가하자마자 동시에 국가적 보호수단을 취했어야 함을 말한다. 그것은 공식적으로 위원회의 사무총장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복사본부가 문제되는 지침서를 관리하는 부서에 보내어져야 한다. 보호조항을 발동의 이유는 특히 다음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 만약 제품이 관련 지침서에 규정된 표준에 미흡한 경우 필수 요구사항들에의 비부합함
- 표준들의 부정확한 적용
- 표준들에 있어서의 단점 (부족)

간단히 말해서 회원국은 제품의 부합성, 부합성평가 절차 또는 표준의 질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제품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표준에 합치하면서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 역으로 위원회(Commission)가 보호조항을 발동한 회원국가에 의해 채택된 조치들에 아무런 정당성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는 그 영역에서 문제가 되는 제품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재확립하기 위해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그 수단들을 철회하도록 요청할 것이다. 보호조항에 관한 제도적 틀을 통해 드러난 위원회의 입장은 기타 회원국들에게 전달되는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금지, 제한 또는 시장으로부터의 제품철수 등을 취해야 하는데 이는 전 공동체에 걸쳐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어야 한다.

만약 회원국이 위원회(Commission)의 입장을 따르기를

거부한다면 위원회는 조약의 Article 169에 의해 규정된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위원회는 회원국들이 그 절차의 결과 및 진전을 알도록 해야 한다. 만약 보호조항이 지침서에 언급된 표준들의 미흡으로 인해 발동된다면 위원회는 관련당사자와의 협의후에 그 사건을 디렉티브 83/189/EEC에 의해 설립된 위원회(Committee)에 제출할 것이다. 그 절차의 이러한 단계에 있어서 보호조항 발동의 훌륭한 이유들이 있고 제품의 공동체 시장으로부터의 철시, 제한, 금지를 위해 조치를 취하도록 지속적으로 통보 받아야 한다.

## 5. 보호조항 적용의 결과들

만약 CE마크를 부착한 제품이 지침서에 의해 규정된 필수적인 비경제적 요구사항들에 합치하지 않음으로 판명되거나 표준들이 올바르게 적용되지 않은 경우 국가별 입법을 기반으로 하여 시장에의 제품 출하를 담당하는 제조업자 대표부, 수입업자 등에 대해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그러나 위원회(Commission)는 만약 어떠한 공공기관들이 보호조항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그들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입증되면 그

것은 제조업자의 권리를 보호, 지탱해야 한다고 느낀다. 만약 제품이 표준의 결핍으로 인하여 합치하지 못하게 되면 Directive 83/189/EEC에 규정된 위원회(Committee)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회(Commission)는 회원국들에게 관련 표준이 지침서에 발간된 목록으로부터 철회될 것인지 통보한다. 실제로 직선적인 철회는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는데 이는 표준이 여기서 문제되는 비부합성 보다 더욱 광범위한 영역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관련 유럽표준화 기관에 통보하고 적절한 경우 새로운 표준화 Mandate를 발간한다.

1988년 12월 21일의 위원회결정 89/45/EEC는 다음의 경우에 있어 즉시 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회원국들이 제품이 정상적이고 예측가능한 조건에서 사용될 때 소비자의 건강 또는 안전에 있어 심각하고 긴급한 위험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제품의 그 영역내에서의 판매 및 사용에 관한 특별한 조건을 붙이거나 제한, 금지등의 긴급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할 때이다.

일단 그가 이 정보를 받게 되면 위원회(Commission)는 그 부합성을 입증하고 그것을 기타 회원국들 내의 능력기관들에 제출

한다. 이러한 정보의 통보에 관한 상세한 절차는 이러한 정보의 송부 및 입수를 위해 회원국들에 의해 지정된 능력있는 국가기관들과 위원회(Commission) 사이에 합의된 것이다. Decision 89/45/ EEC의 목적은 심각하고 긴박한

위험의 경우에 신속한 정보의 교환을 보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단 채택되면 이러한 규정들은 신접근법 지침서내의 관련 제품들의 안전에 관련된 특정한 규칙들을 보충할 것이며(특히 보호조항과 관련하여( 1994년 중반부터

보호조항의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다양한 접근들에 비추어 볼 때 개별회원국 내의 관련된 다양한 국가기관들에 의한 시장감시에 관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정의하고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인다. 전안

## '94 상반기 KOEX 전시일정

전 시 명	전 시 기 간	문 의 처
'94태평양아시아관광협회관광교역전(PATA)	4. 9~13	한국관광공사
서울국제공작기계전(SIMTOS)	4. 12~18	한국공작기계공업협회
'94 태평양아시아관광협회총회(PATA)	4. 17(1)	한국관광공사
제16회 국제환경오염방지기기전(INPOCO)	4. 25~29	(사)환경보전협회
국제포장생산 및 공정기술전(IPP)	4. 26~29	(주)경연전람
서울국제화학플랜트전(SICHEM)	4. 26~30	KOEX 전시 2 과
서울국제식품기술전(SEOUL FOOD)	4. 26~30	대한무역진흥공사
서울국제종합인테리어전	5. 6~10	KOEX 전시 1 과
서울국제청소산업전(SANI)	5. 6~10	KOEX 전시 1 과
서울국제세탁기자재전	5. 6~10	KOEX 전시 1 과
서울국제노후관련산업전	5. 6~10	KOEX 전시 2 과
대한민국국제섬유기계전시회(KORTEX)	5. 7~11	한국섬유산업연합회
SPA 서울콜렉숀(춘계) (S. F. A)	5. 14~18	KOEX 전시 1 과
제13회 한국국제컴퓨터사무자동화기기통신기기전시회(KIECO)	5. 17~22	한국경제신문사
제8회 국제건강산업박람회(INTERHEALTH)	5. 19~23	한국국제전시회
제3회 국제재생산업전실회(RECYCLING FAIR)	5. 19~23	한국국제전시회
국제방송장비·음향기기전시회(KOBA)	5. 25~28	한국일보사
국제전자부품 및 생산장비전/정부조달전자제품전(KEPES)	5. 29~6. 2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
서울국제물류전(LOGIS TECH SEOUL)	5. 31~6. 4	KOEX 전시 1 과
서울국제주방산업전(SIKITCHEN)	6. 10~14	KOEX 전시 1 과
서울국제호텔설비 및 용품전(SIHOTES)	6. 10~14	KOEX 전시 1 과
제12회 국제플라스틱, 고무전시회(KOPLAS)	6. 11~15	한국일보사
제4회 국제세라믹산업전시회(CERAKOR)	6. 11~15	한국일보사
서울국제계측기기전(SEOUL INSTRUMENT)	6. 21~25	대한무역진흥공사
제3회 국제종이산업전	6. 23~26	한국전람
제8회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전시회(SEK)	6. 24~29	전자신문사